

의안번호	2216267
의 퇴 인	김주영의원
회 답 일	2025.5.12.
추 계 번호	26B0395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,200만원, 2031년 1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2,100만원(연평균 2,4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원격영상회의 (안 제16조의2)	92	0	9	9	10	121	24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4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5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	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함(제2항) 1.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: 각 10명 이상 75명 이하 2. 공익위원: 10명 이상 105명 이하	의무규정
2	안 제14조의4(연구관)	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노동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을 둠(제1항) 연구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 등 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6조의2 (원격영상회의)	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신청,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7조의3 (전자문서 및 전자송달·통지)	당사자,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정보처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, 노동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음(제2항) 1.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 2.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처분 결과 3.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분 4. 제23조제5항에 따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이 법에 따라 송달하거나 통지하는 문서	재량규정
		사건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송달에 따른 통지는 사건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		제2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조사관이 송달 또는 통지할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함(제4항)	의무규정
		제2항의 경우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.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(제5항)	의무규정
		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의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.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(제6항)	의무규정
		이 법에 따라 작성·제출·송달·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봄(제7항)	의무규정
		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·송달·통지의 대상,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함(제8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현행법 제6조제2항¹⁾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를 근로자위원·사용자위원·공익위원으로 구분하면서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－ 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같은 수로 하고, 공익위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며, 구체적인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－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10명 이상 75명 이하로 확대하고 공익위원 정원의 상한도 10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－ 해당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,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실제 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 수의 증가로 인해 고정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으나, 개정안의 시행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부문별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할 수 있음 －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회의 개최 건수의 증가 여부 및 횟수와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나,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
2	안 제14조의4(연구관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현행법 제14조의3²⁾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－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구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원의 변화와 연구관의 직급 등에 의해 달라지나, 연구관의 임명, 자격, 업무범위 등 연구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		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
3	안 제16조의2(원격영상회의)	○	• 비용추계 - 유사사례 참고
4	안 제17조의3(전자문서 및 전자송달·통지)	—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당사자,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정보처리시스템”)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,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, 노동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- 현행 「노동위원회규칙」 제28조의2²³⁾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 제출 및 전자송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1) 「노동위원회법」

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근로자위원”이라 한다)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사용자위원”이라 한다)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공익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: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
2. 공익위원: 10명 이상 70명 이하

2) 「노동위원회법」

제14조의3(조사관)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.

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.

③ 조사관은 위원장,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,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조사관의 임명·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「노동위원회규칙」

제28조의2(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) ①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(이하 전자시스템)을 통하여 이의서·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. 다만, 「노동위원회법」 제1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·명령서·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.

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할 경우, SMS문자,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사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⁴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노동위원회는 「노동위원회규칙」 제2조제13호 및 제11조의²⁵⁾에 따라 원

- ④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동의한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건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
- ⑤ 전자송달 등록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
- ⑥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또한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송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⑦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기획총괄과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4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6년 1월 20일 기준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1.9	2.0	2.0	2.0	2.0	2.0

5) 「노동위원회규칙」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3. "원격영상회의"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,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,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

제11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, 그 밖의 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고,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위원, 당사자, 그 밖의 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.

-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계시설이 설치된 노동위원회 등 희망하는 원격영상회의 출석장소와 신청 이유를 별지 제57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실시여부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제3항의 승인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 외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.
- ⑤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에도 불구하고,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

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음

- 현재 노동위원회가 운영하는 원격영상회의는 ‘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,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되는 회의’로 노동위원회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을 포함함
- 개정안은 현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원격영상회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영상회의는 제16조제2항⁶⁾에 따른 회의를 말하며, 이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원격영상회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산출하며,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인력이 있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별도의 용역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,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 - (시스템 구축비용)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
 - ※ 원격영상회의시스템(12개)×영상코덱(2개)×3,850,000(단가)=92,400,000원

하거나 인적·물적·기술적 요소, 심문회의 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승인 할 수 있다.

⑥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

2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⑦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는 신청 당사자에게, 제6항에 따른 실시 여부는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.

⑧ 원격영상회의는 승인 후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, 해당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는 취소된다.

1.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참여 철회

2.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제5항의 사유에 따른 직권 원격영상회의 취소

⑨ 제8항제1호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하였다도 참여 신청한 상대 당사자에 대하여는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한다. 다만, 상대 당사자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이용하여 분리심문을 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.

6) 「노동위원회법」

제16조(회의의 소집)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－ (시스템 유지·관리비용) 10%⁷⁾

※ 이때, 시스템 유지·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(2027년)이 완료된 이후 무상 하자 보수 기간(1년)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⁸⁾하며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산출

- 추계 결과, 노동위원회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2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원격영상회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용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구축비(A)	92	—	—	—	—	92
유지관리비(B)	—	—	9	9	10	28
합계(C=A+B)	92	—	9	9	10	121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4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5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7) 효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,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(10~15%)을 준용

(자료: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「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2025년 개정판)」, 2025.5.)

8)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2025.5.)에 따르면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 하자보수기간으로 하고,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관리를 지양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